

투자위험등급 :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플러스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Plus 신종 법인용 MMF1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Plus 신종 법인용 MMF1호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Plus 신종 법인용 MMF1호
2. 집합투자업자 명칭: 플러스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http://www.plusasset.com>)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4. 작성기준일: 2015년 09월 22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5년 10월 05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모집(매출) 총액: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 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3
제1부 모집 및 매출에 관한 사항	----- 4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4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4
3. 모집예정금액	----- 4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4
5. 인수에 관한 사항	----- 4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4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5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5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5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 6
4. 집합투자업자	----- 6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6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7
7.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 7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7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 9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10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12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14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5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16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에 관한 사항	----- 17
1. 재무정보	----- 17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 19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19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21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21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 22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22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24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24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26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27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29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30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 사항	----- 30
[참고]용어풀이	----- 31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7. MMF펀드(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Plus 신종 법인용 MMF1호(47976)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단기금융(MMF)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해당사항 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10조좌

주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2) 모집장소: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plus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Plus 신종 법인용 MMF1호(47976)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사항
2005.03.08	최초설정
2005.08.18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변경
2005.11.08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 보수율 변경
2005.11.21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의 변경
2006.07.01	판매가격의 변경
2008.10.23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 보수율 변경
2008.11.11	신탁업자의 변경
2009.04.25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Plus 신종 MMF 제1호 (법인용) → Plus 신종 법인용 MMF1호(은행채)
2009.10.06	법령변경에 따른 투자대상/투자제한 변경
2010.05.14	자본시장법 제123조 제3항 제1호에 의거한 정기 갱신
2011.04.06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투자신탁 해지요건 변경)
2011.06.17	①펀드명칭 변경 [Plus 신종 법인용 MMF1호(은행채) → Plus 신종 법인용 MMF1호] ②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이익분배조항 변경) ③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자산운용보고서 교부방법)
2011.11.14	투자대상 정정 ①채권: 사채권 설명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제외조항 삭제 ②어음: 기업어음 투자 등 구체적으로 명기 운용전문인력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2012.04.19	[별첨] 당일 공고된 기준가격으로 매입·환매가 가능한 경우 - 일부 정정
2013.04.17	①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신고서(투자설명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②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③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④투자중개업자 선정관련 내부기준 변경사항 반영
2013.07.17	①투자제한사항 추가 기재(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수익증권 투자제한) ②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조항 추가
2013.08.29	①투자대상자산 추가-전자단기사채등 ②투자제한사항에 단서조항 신설
2013.11.01	①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②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3.12.02	①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HSBC펀드서비스 → 신한아이타스) ②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③최근현황 갱신
2014.01.24	①운용전문인력 변경(이지현 → 이관홍)
2014.04.11	①결산에 따른 최근현황 갱신 ②투자대상 및 투자제한 (규약 기재순서에 따라 재정렬) ③매입(자금 납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는 경우 추가기재) ④환매(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대금 지급하는 경우 추가기재)
2014.07.17	①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②최근현황 업데이트
2014.08.13	①투자신탁 보수율 변경

2015.03.26	①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②세법 개정사항 반영 ③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등급 기준변경 ④규약 변경사항 반영(의무해지 및 임의해지 관련) ⑤최근현황 갱신
2015.07.01.	①채권평가회사 추가 ②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일부 변경 ③최근현황 갱신
2015.10.05.	①투자신탁 보수율 변경 ②집합투자업자 회사개요 중 주요 주주현황 변경 ③최근현황 갱신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플러스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27 사학연금회관빌딩 13층 (T. 02-3787-2700, www.plusasset.com)

주1)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출생 년도	직위	운용현황		주요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이관홍	1968	상무	8	9,232억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1993.08~1999.05 대한투자신탁 채권운용 1999.06~2000.06 중앙종합금융수석펀드매니저 2000.07~2003.08 새마을금고연합회 채권운용 2004.01~2005.11 굿앤리치자산운용 2006.01~현재 플러스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해당사항 없음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음

주1)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f.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운용역	운용기간
이지현	2011.11.09~2014.01.23
이관홍	2014.01.24~

주1)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내역입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운용회사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추가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사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을 교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판매회사의 영업점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단기금융(MMF), 개방형, 추가형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기업어음(ABCP포함)/CD/정기예금/채권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이 투자신탁 채무증권(법제4조제3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을 말하며 환매조건부매매에 의한 투자금액을 제외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운용합니다.

투자대상	주요 내용
채권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사채권(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어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
집합투자증권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증서
환매조건부 매도	집합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증권 총액의 100분의 5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만기 6개월 이내의 금융기관 예치
전자단기사채 등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신용평가등급의 제한 등	
채무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및 어음 등 포함) 신용등급	①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2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이하 “상위 2개 등급”이라 한다) 이내.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채무증권은 신용등급이 상위 2개에 미달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할 수 있음. 1.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채무증권

	<p>2. 담보 또는 처분옵션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p> <p>3.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채무증권으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p> <p>②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당해 채무증권에 대한 신용위험을 재평가하고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p> <p>③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을 지체 없이 처분 하거나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p>
--	--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①이해거래인 과의 거래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한다)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p> <p>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p>
②동일종목 투자	<p>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최상위 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거나 자산총액의 2%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다만, 어음의 경우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1%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분류함. 다만, 다음의 경우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종목에 투자할 수 있음.</p> <p>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p> <p>나. 자산총액의 30%까지: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p>
③동일거래 상대방	<p>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금액(자금융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을 제외)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p> <p>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p> <p>가. 자금융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p> <p>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매수</p> <p>(1)만기 30일 이내일 것</p> <p>(2)거래상대방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일 것</p> <p>(3)대상증권은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최상위등급의 채무증권일 것</p>
④환매조건부 매도	<p>집합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증권 총액의 5%를 초과하는 행위</p>

⑤집합투자증권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⑥국채증권 투자	남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⑦채무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상을 채무증권(법제4조제3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을 말하며, 환매조건부매매에 의한 투자금액을 제외한다)에 투자하지 않는 행위
⑧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을 차입 또는 대여하는 행위	
⑨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	가.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환율·증권의 가치 또는 증권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 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자산 나. 위의 가목과 같이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⑩이 투자신탁재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가 75일을 초과하는 행위	
⑪이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⑫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신탁재산의 100분의 10 이상을 다음의 자산에 운용하지 않는 행위	(1) 현금 (2) 국채증권 (3) 통화안정증권 (4) 잔존만기가 1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 각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양도성 예금증서·정기예금 - 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사채권(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기업어음증권 - 영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 전자단기사채 (5) 환매조건부매수 (6) 단기대출 (7) 수시입출입이 가능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⑬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신탁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의 자산에 운용하지 않는 행위	(1) 현금 (2) 국채증권 (3) 통화안정증권 (4) 잔존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 각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양도성 예금증서·정기예금 - 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사채권(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기업어음증권 - 영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 전자단기사채 (5) 환매조건부매수 (6) 단기대출 (7) 수시입출입이 가능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 -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⑤의 투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 일시적인 대량 환매대금의 지급으로 ⑫~⑬의 운용비율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회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그 비율에 적합한 것으로 봄	

주1)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① 신용등급이 우량한 기업어음(ABCP포함)/CD/정기예금/채권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에 주력할 것입니다.

② 위험관리는 신용평가등급 제한 및 펀드의 듀레이션¹⁾ 조절전략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1) 듀레이션이란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가중평균만기로서 채권가격의 이자율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입니다.

주2)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 특성상 별도 비교지수는 없으나,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2) 위험관리

① 운용팀내 투자의견을 집약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공동의사결정 과정을 도입합니다.

② 철저한 신용분석을 통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용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기업의 매출액 및 현금흐름, 부채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별된 기업에만 투자하도록 합니다.

③ 채권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과정을 중시하고 유연한 시장대응으로 투자자의 수익극대화 도모와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기업에 대해 수시 또는 정기자료 등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또한 분산투자를 통하여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④ 우량 채권위주의 자산구성으로 수익성, 안정성 및 유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집합투자재산을 구성합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우량 기업어음(ABCP포함)/CD/정기예금/채권 등 단기금융상품을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해당 수익증권의 투자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과 시장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으로 인하여,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특히, 이 집합투자기구는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으로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금리변동위험	채권 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 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 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어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

	권, 어음 등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단기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해당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장부가와 시가와의 괴리 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위험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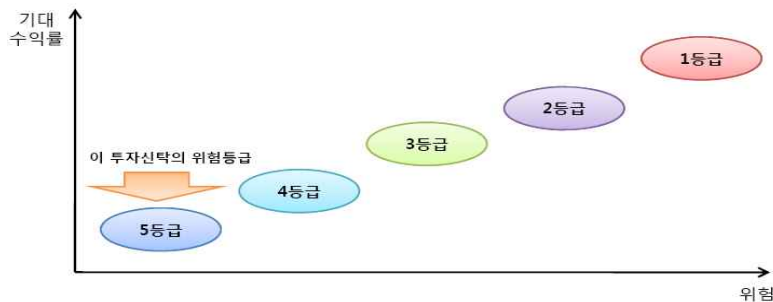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위험	투자대상 자산의 유동성이 낮은 경우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 매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중도매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위험 등급 (5) 등급 매우 낮은 위험

이 투자신탁은 우량 기업어음(ABCP포함)/CD/정기예금/채권 등 단기금융상품을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MMF투자신탁으로 증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보다는 이자수령 등에 따른 이자소득을 추구합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나 시가형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보다 가격변동성에 노출될 위험이 적으므로 **5등급 중 5등급(매우 낮은 위험)**에 해당되는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상기 위험수준을 이해하고 적은 위험과 높은 유동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환매수수료 부담 없이 수시로 입출금하고자 하는 법인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플러스자산운용회사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

등급	등급내용	등급 기준
1등급	매우높은위험	- 위험자산 ^{주1)} 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에 1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단, 최대손실가능비율 ^{주1)} 이 투자원금 대비 20% 이상)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 위험자산에 최대편입비가 5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에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단,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 대비 20% 미만)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위험	- 위험자산에 최대편입비가 50% 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에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원금보존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위험	- 신용등급이 A-이상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낮은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국공채 전용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주1) ① 위험자산은 주식, REITs, 상품(Commodity), 투기등급채권(BB+이하)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을 말합니다.
② 최대손실가능비율은 집합투자계약, 투자설명서 등을 기초하되 실제 운용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2) ①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동 기준에 고려하여 별도로 분류합니다.
② 본 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플러스자산운용(주)의 자체기준으로 투자자의 투자 성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이 투자신탁은 **법인투자자 전용** 단기금융투자신탁으로 개인투자자는 매입하실 수 없습니다.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① **오후 5시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② **오후 5시경과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③ 다음의 경우에는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1.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도나 환매에 따라 수취한 결제대금으로 결제일에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수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2. 수익자가 급여 등 정기적으로 받는 금전으로 수취일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기로 판매

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오후 5시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D)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2영업일(D+1)**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② **오후 5시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D+2)**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됩니다.



③ 다음의 경우에는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1.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수에 따른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2. 수익자가 공과금 납부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투자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1)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2)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1)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2)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3)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공고일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매일 산정하여 산정한 기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게시 합니다.
공시방법 및 장소	집합투자업자(http://www.plusasset.com) ·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주1)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투자신탁(MMF)으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그 종류별로 다음의 방식에 의한 장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내용
채무증권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 가격
채무증권 외의 자산	취득원가에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

주1) 유효이자율법이란 유효이자율(채무증권의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취득원가에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2)집합투자업자는 위의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가 1,000분의 5 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편입 증권 등을 시가에 의하여 조정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시가평가 방법

구분	내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 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수익증권	평가기준일에 거래소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수익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주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법인MMF1	가입제한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부과기준		-	-	-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 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 비용	총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 거래 비용
법인 MMF1	0.040%	0.056%	0.010%	0.010%	0.0054%	0.1214%	0.1214%	0.0054%
지급 시기	매3개월	매3개월	매3개월	매3개월	사유 발생시	매3개월	매3개월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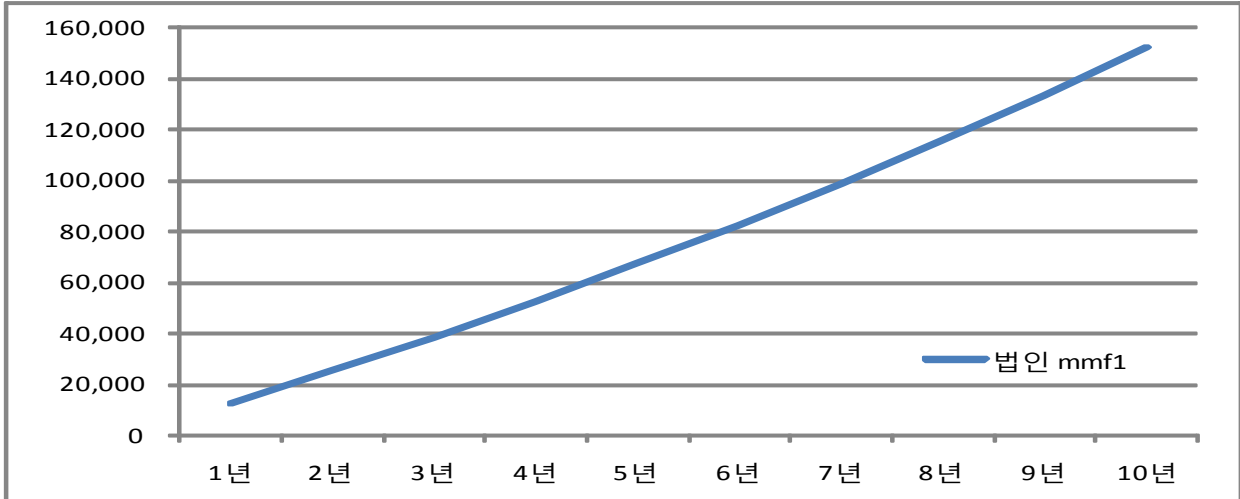
주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원)

구분	1년	3년	5년	10년
보수 및 비용	12,440	38,223	66,911	151,790

주1)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또는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다음의 세무관련 사항은 투자신탁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으며, 과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익 배분

(1) 투자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2)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투자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투자신탁에서 투자해서 발생한 이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는 과표기준가격을 기

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투자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14%, 지방소득세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14%, 지방소득세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법인의 다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정보에 관한 자료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11기(20150308-20150907)	회계기간 미경과	해당없음
제10기(20140308-20150307)	이촌회계법인	적정
제9기(20130308-20140307)	이촌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11기	제 10기	제 9기
	(2015.09.07)	(2015.03.07)	(2014.03.07)
운동자산	1,603,927,083,017	1,538,163,872,926	567,302,794,445
증권	1,603,926,138,636	1,538,089,764,103	567,185,978,377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944,381	74,108,823	116,816,068
기타 운동자산	0	0	0
기타자산	6,788,979,930	5,989,355,251	4,076,994,840
자산총계	1,610,716,062,947	1,544,153,228,177	571,379,789,285
운동부채	0	0	0
기타부채	343,467,712	255,958,252	114,667,981
부채총계	343,467,712	255,958,252	114,667,981
원본	1,595,910,720,573	1,506,339,358,593	556,483,982,175
수익조정금	-2,093,870,894	15,061,922,729	-1,472,861,754
이익잉여금	16,555,745,556	22,495,988,603	16,254,000,883
자본총계	1,610,372,595,235	1,543,897,269,925	571,265,121,304

(단위: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1기	제 10기	제 9기
	(2015.03.08 - 2015.09.07)	(2014.03.08 - 2015.03.07)	(2013.03.08 - 2014.03.07)
운동수익	17,867,360,629	23,879,924,013	17,235,903,874
이자수익	19,203,303,327	23,824,075,425	17,247,135,471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1,335,942,698	55,848,588	-11,231,597
기타수익	0	0	0
운동비용	1,133,255,252	1,191,334,132	869,694,326
관련회사 보수	1,133,255,252	1,191,334,132	869,694,326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178,359,821	192,601,278	112,208,665
당기순이익	16,555,745,556	22,495,988,603	16,254,000,883
매매회전율	0.00	0.00	0.00

나. 대차대조표

이 투자신탁은 회계감사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20-1-1 조(재무정보)에 의거하여 대차대조표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대차대조표는 한국금융투자협회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손익계산서

이 투자신탁은 회계감사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20-1-1 조(재무정보)에 의거하여 손익계산서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손익계산서는 한국금융투자협회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억좌/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 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 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 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 분수)	금액
2015.03.08 - 2015.09.07	15,063	15,063	63,222	63,491	62,327	62,616	15,959	16,104
2014.03.08 - 2015.03.07	5,565	5,565	64,113	65,098	54,615	55,449	15,063	15,439
2013.03.08 - 2014.03.07	6,044	6,044	30,957	30,184	32,231	30,678	5,565	5,713

주1)2015.3.8~2015.9.7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 35,214,431,905좌/35,214,431,905원

주2)2014.3.8~2015.3.7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 49,909,872,412좌/49,909,872,412원

주3)2013.3.8~2014.3.7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 14,695,440,507좌/14,695,440,507원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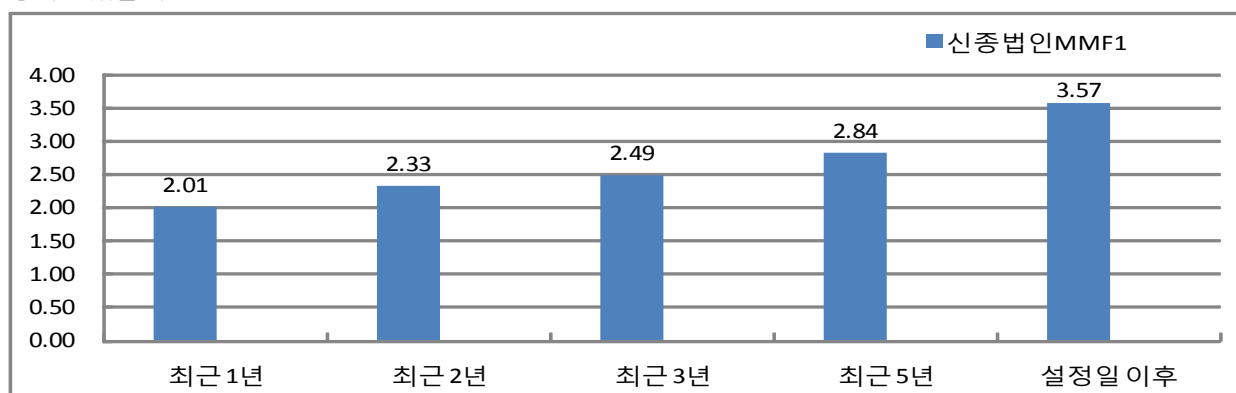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4.09.23 ~15.09.22	13.09.23 ~15.09.22	12.09.23 ~15.09.22	10.09.23 ~15.09.22	05.03.08 ~15.09.22
신중법인MMF1	2.01	2.33	2.49	2.84	3.57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0.00

주1)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2)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을 적절히 반영하는 비교지수를 선정하기 곤란하여 비교지수의 기재는 생략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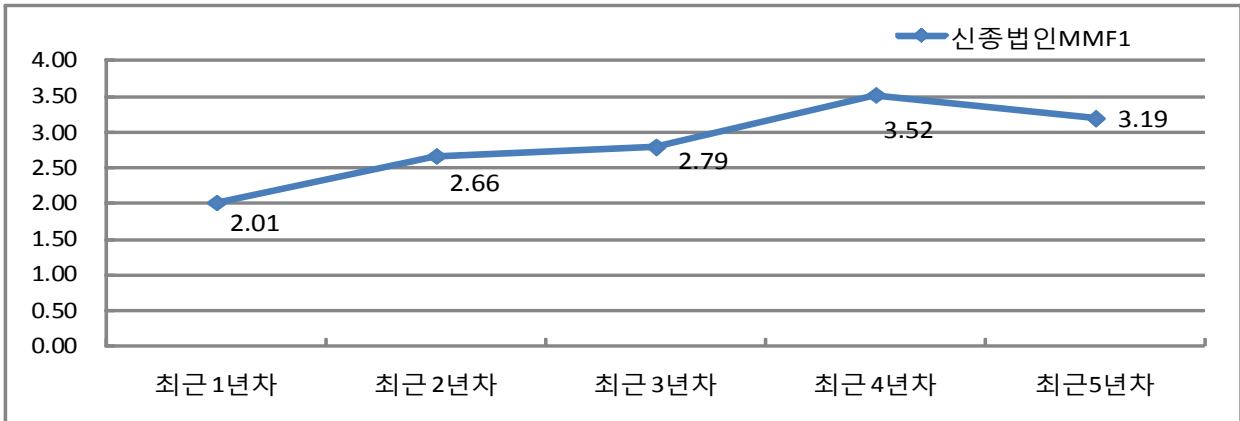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14.09.23 ~15.09.22	13.09.23 ~14.09.22	12.09.23 ~13.09.22	11.09.23 ~12.09.22	10.09.23 ~11.09.22
신종법인MMF1	2.01	2.66	2.79	3.52	3.19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0.00

주1)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2)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을 적절히 반영하는 비교지수를 선정하기 곤란하여 비교지수의 기재는 생략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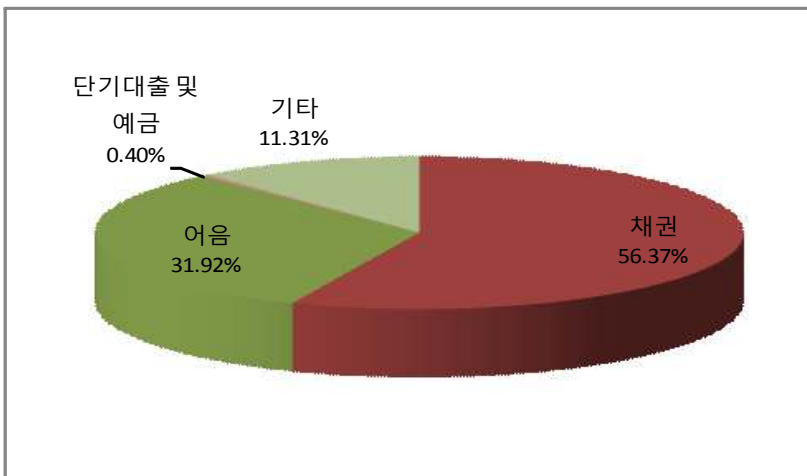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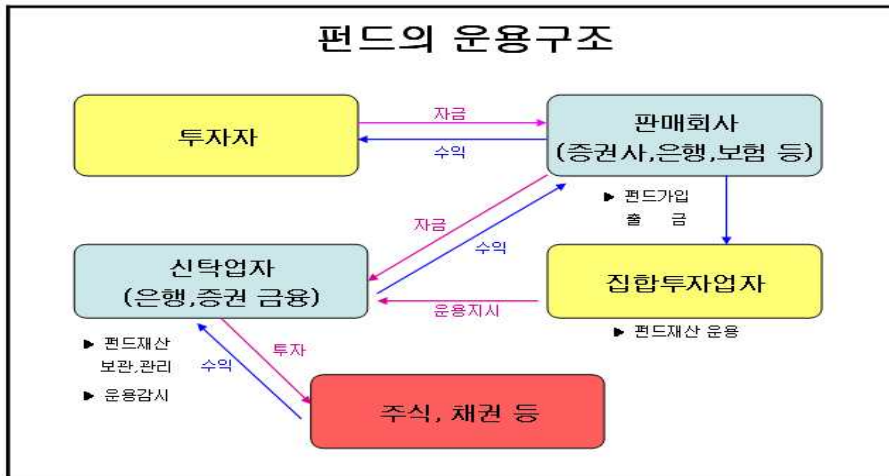
[2015.09.07 현재 / 단위 : 억원, %]

통화 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 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0	9,079	5,142	0	0	0	0	0	0	65	1,821	16,107
	(0.00)	(56.37)	(31.92)	(0.00)	(0.00)	(0.00)	(0.00)	(0.00)	(0.00)	(0.40)	(11.31)	(100.00)
합계	0	9,079	5,142	0	0	0	0	0	0	65	1,821	16,107
	(0.00)	(56.37)	(31.92)	(0.00)	(0.00)	(0.00)	(0.00)	(0.00)	(0.00)	(0.40)	(11.31)	(100.00)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플러스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27 사학연금회관빌딩 13층 (T.02-3787-2700, www.plusasset.com)
회사연혁	2000. 01. 19 법인설립(자본금 70억원) 2000. 04. 25 금융감독위원회에 자산운용회사 등록 2001. 03. 20 금융감독위원회에 투자자문(일임)업 등록 2003. 01. 09 플러스자산운용(주) 사명변경 2003. 12. 30 증자(자본금 100억)
자본금	100억
주요주주현황	윤호중(100%)

나. 주요 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백만원)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14.12.31	'13.12.31	계정과목	'14.12.31	'13.12.31
유동자산	19,240	16,100	영업수익	6,838	4,045

고정자산	2,854	2,920	영업비용	3,581	2,790
자산총계	22,094	19,020	영업이익	3,257	1,255
유동부채	1,036	520	영업외수익	18	0
고정부채	0	0	영업외비용	0	44
부채총계	1,036	520	경상이익	3,274	1,211
자본금	10,000	10,000	세전순이익	3,274	1,211
이익잉여금	11,058	8,500	법인세등	716	313
자본총계	21,058	18,500	당기순이익	2,558	898

라. 운용자산 규모

[2015.09.22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및부동산파생	특별자산및특별자산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376	2,322	1,980	2,858	0	1,380	600	19,695	29,212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신탁업자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신탁업자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

▶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증권금융(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9 (T. 3770-8800 , www.ksfc.co.kr)
회사연혁	1955.10 한국연합증권금융(주)로 창립 1962.07 한국증권금융(주)로 개칭 2000.08 자본금 3,400억원으로 증자 2002.12 신탁업무개시 2004.06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 개시

▶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가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투자신탁 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 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아이타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http://www.shinhanaitas.co.kr)
회사연혁	2000.06 법인 설립 2005.12. 솔루션 사업본부 신설 2007.09 사무관리계약규모 100조 돌파(업계최초) 2008.05 신한은행 자회사로 편입

▶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KIS채권평가(주)	에프앤자산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T.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T. 02-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T. 02-3215-14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T. 02-721-530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ap.com	www.nicepni.co.kr	www.bond.co.kr	www.pricing.com

▶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②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③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수익자총회의 소집

- 1)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투자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투자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2)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투자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3)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지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투자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의결권 행사방법

- 1)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2)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 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계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계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4. 그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
- 3)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연기수익자총회

- 1)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2)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분

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 (단, 합병, 분할, 분할합병 및 그 밖에 법 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법 시행령 제 217 조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및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5) 투자신탁의 합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작성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반대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가 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1)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의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취득자가 그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취득자가 취득의 청약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가지는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인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인]

마. 재판관할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투자자의 주소지 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이 상품의 집합투자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3)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집합투자업자 인터넷(www.plus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3)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4)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1)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위의 ‘(3) 및 (4)’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 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위의 ‘(3) 및 (4)’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법 제 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라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1) 회계기간의 개시일 부터 3월이 종료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신탁계약기간의 종료일, 신탁계약기간의 해지일 현재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의 기준가격
- 2) 직전의 기준일부터 당해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당해 운용기간중의 손익상황
-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
-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 4) 법 제247조제5항 각호의 사항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16조에 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 환매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②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plusasset.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 4) 집합투자총회의 의결내용
- 5) 신탁약관,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8) 설정 및 설립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0) 그 밖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2)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1)지분증권의 경우

평가항목	평가시 고려요인	평가자	가중치
조사분석서비스 유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산업, 기업 분석 ▪ 정보제공(시장동향, 기업동향, 자료 요청) ▪ 기업탐방 및 IR 지원 ▪ 세미나 개최 	주식운용 담당자 주식리서치 담당자	80%
주문집행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문집행의 정확도 ▪ 주문집행의 신속성 ▪ 유리한 호가의 제공 ▪ 오류발생 빈도 	주식매매업무 담당자	15%
Settlement	▪ Back Office 협조 능력	운용지원 담당자	5%

(2)채무증권의 경우

평가항목	평가시 고려요인	평가자	가중치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목 및 상품 정보 제공 ▪ 시장동향 자료, 세미나 지원 등 	채권운용 담당자 채권리서치 담당자	60%
주문집행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리한 호가 제공 ▪ 신속/정확한 응대 및 체결 	채권매매업무 담당자	30%
Settlement	▪ Back Office 협조 능력	운용지원 담당자	10%

(3)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평가항목	평가시 고려요인	평가자	가중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제공능력 ▪ 투자정보 및 기타 운용기여 	파생상품운용 담당자	60%
주문집행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문집행의 정확도 ▪ 주문집행의 신속성 ▪ 오류발생 빈도 ▪ 당사 운용시스템과의 호환성 	파생상품매매업무 담당자	40%

주1) 매매업무담당자는 해당 운용본부장의 확인을 받은 중개회사의 명단을 평가자에게 제공하며, 평가자는 그 중개회사에 대하여 이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주2) 평가자는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5단계(10, 8, 6, 4, 2점)로 평가한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용어 풀이

용어	내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익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